

제4회 파주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(폐회중)

1. 회기 : 1996년 8월 9일(금) 14:00				
2. 의사일정				
일	시	차수	의 사 일 정	비 고
1996년 8월 9일 (금) 14:00		2차	1. 의사일정결정의건 2. 수해피해현황보고청취의건 ○ 수해피해현황보고 ○ 질의·답변	

현 황	문 제 점	건 의
<p>【소규모시설에대한복구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규모시설물이 수해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이 4백만원이상 되어야 지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, ○ 또한 복구액은 피해액의 2배를 넘지못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액이 4백만원이하인 소규모 시설물(마을안길도로, 농로, 마을진입로)이 많이 파손되어 있으나 재정지원이 되어 영구복구가 어려움 ○ 복구는 임시응급 조치가 아닌 항구적으로 되어야 하나 피해액의 2배를 넘지 못하므로 호우시 재피해가 예상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대상 피해액을 하향조정요망 (500천원) ○ 복구액은 피해액에 관계없이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함
<p>【농업기반사업분야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성면 울포리, 주월리 등 임진강 강변에 위치한 농경지가 유실 및 매몰되어 경계가 불분명한 실정이며 경지정리 사업시행시 현지원 기준으로는 복구에 어려움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경지매몰, 유실지역에 대하여는 항구 복구차원에서 기반정비사업이 지원 60%, 용자 30%, 자부담 10%로 책정되어 있어 영농의욕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○ 또한 동절기 지원시 '97년 봄부터 경작이 곤란한 실정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경지 1ha당 복구비를 전액 지원하고 조기에 (가을)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조기지원 요망

수해 복구 상황

□ 이재민 구호 : 1,750세대 4,870명

- 문산초등학교 외 22개시설 분산수용조치
 ※ 현재 잔류 이재민 : 63세대 197명(4%)
- 구호활동 : 쌀 34,640kg, 라면 19,706상자, 부식 및 생필품 102종
 108,984점
- 구호품 접수 : 232건 (기관 70, 단체 146, 개인 16)
- 사망자 위로금 지급 : 1명 10백만원

□ 응급 복구

○ 인력지원(명)

계	공무원	경찰	소방	군부대	사회단체	주민	기타
160,598	9,552	12,016	1,455	30,849	10,212	90,660	5,854

○ 전문기술지원 : 3,869명(전기753명, 가스259명, 농기계206명,
 가전제품 2,109명, 자동차 330명,
 보일러 212명)

○ 의료지원 : 197명(의사 64, 약사 7, 간호사 71, 보건요원 55)

○ 장비지원(대)

계	소방차	레미콘	청소차	양수기	분뇨차	굴삭기	덤프	대형 물통	기타
4,481	377	210	661	690	103	440	880	268	852

<복구상황>

- 상수도,철도,도로,교량,전기 완전 복구('96.8.3)
- 농경지 병충해 방제(2,650ha), 폐사가축매립(97,840두) 완료
- 급수(3,810톤), 쓰레기처리(11,503톤), 방역(693회),
진료(7,359명), 예방접종(15,518명)

<복구추진중>

- 하천제방 45개소 65,232m중 35개소 8,946m 완료(78%)
- 수리시설 95개소중 80개소 완료(84%)
- 전화 19,137회선중 12,434회선 복구('96.8.17 완료예정)

건의사항

1. 상수도 취수장 이전건설 지원

- 현위치 : 임진강연안 파평면 금파리 1,424m²(용량 68,200 3/일)
- 임진강 범람으로 기존전기설비 및 펌프손상,상수도 공급중단
- 안전지대로 취수장 이전(확장) 불가피
→ 현 취수장 이전, 취수용량 20만m³로 확장
- 건 의 : 소요사업비 8,521백만원 지원 요망

2. 임진강 마정제 복구 지원

- 7. 27 문산읍 마정리 마정제 유실(2.6km)로 농경지 침수(260ha)
- 호우시 범람과 조수영향으로 수해 재발우려 및 군작전 주요
요충지
- 건 의 : 마정제 조기복구 요망(건교부, 국방부)

3. 농조소관 양수장, 용수로 정비 지원

- 금번 수해로 용·배수로 유실로 인하여 용수차질
· 피해상황 : 양수장 23개소, 용수로 18.6km
- 현재 벼 수잉기로 많은 용수가 필요한 시기로 영농지장 초래
- 건 의 : 양수장 응급복구사업비(544백만원) 국비지원 요망

4. 국도 37호선 확·포장공사 조기 시행

- 구 간 : 파평 두포리 ~ 적성 어유지리간 20km(폭4차선)
- 수해지역내 침수 도로로서 조기사업 시행 절실
- 건 의 : 조기 시행 요망(건교부)

5. 준용국도 56호선 신설 및 확·포장 건의

- 구 간 : 자유로~통일로 교차~의정부(6개 읍,면 경유)
- 사업개요 : 신설 12km, 확·포장 23km(사업비 300억원)
- 건 의 : 수해읍면 개발차원에서 '97년도 국·도비 우선지원
요망

6. 항구적 문산도시개발사업 시행

- 임진강 하류 저지대로 '65년, '96년 2차 침수로 건물 노후
- 통일대비 사업으로 도시재개발 차원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요망
- 건 의 : 도로,하수도 등 도시기반사업 국비지원 요망

피해복구비 지원 및 보상대책 건의

□ 주택이외의 건물 복구비 지원

- 수해복구비 산정기준에 주택복구비만 있고 공장,상가 등에 대한 복구비가 없으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.
- 건 의 : 공장,상가 등에 대한 건축물에도 복구비가 지원 되도록 조치(복구비 산정기준 마련)

□ 주택복구비 현실화

- 주택복구시 평당 단가(15평지원기준) 120만원 지원으로 는 복구가 어려운 실정임.
- 건 의 : 주택복구기준상향조정
· 평당 120만원 ⇒ 160만원

□ 침수주택 수리비 현실화

- 현행 주택수리비 보상기준은 현실과 맞지않아 많은 침수주민들의 불만을 사고있음.
- 건 의 : 주택수리비 상향조정
· 평당 35~75만원 ⇒ 평당 150~200만원

□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원

- 무허가 건축물에는 복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의연금 지급(전파180, 반파90만원)으로는 복구불능(피해주민 복구비 요구)
- 건 의 : 허가건축물과 동일한 지원요망

□ 이재민 구호비 현실화

- 재해발생시 지급되는 생계구호비가 현실에 맞지않아 이재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.
- 건 의 : 1가구 1인당 구호기준 상향조정
 - 전 파 : (구호기간 53일) 98,443원 ⇒ 214,000원
 - 반 파 : (구호기간 23일) 42,720원 ⇒ 107,000원

□ 침수 점포상품에 대한 재해 복구비 대책마련

- 시가지침수로 많은상가(877개소)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상품에 대한 피해복구나 보상기준이 없음 (상인들 보상요구)
- 건 의 : 상품이나 기자재에 대한 복구비(보상비) 산정토록 조치 또는 상업자금 장기저리 융자 (점포당 2천만원 규모) 요망

□ 대형건축물 전기 및 기계설비 피해복구 대책마련

- 지하실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나 복구비 지원(보상)기준이 없음.
- 건 의 : 기계나 전기설비등은 피해액에 따라 복구비 지원요망

□ 어선피해 복구비 현실화

- 금번수해로 어선이 유실(45척)되어 어가생계가 막막하나 지원기준이 미흡함(지원 20%, 용자 및 자부담 80%)
- 건 의 : 지원비율 상향 조정 요망(지원 80%)

□ 하천부지내 농작물피해 보상

- 하천부지내 피해는 사용료만 감면되고 농작물 피해 보상 기준이 없음.
- 건 의 : 하천부지내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

□ 화훼피해 보상

- 화훼에 대한 침수피해 복구산정기준이 없어 일반작물에 포함 시킴으로서 실제 피해액지원이 불가함.
- 건 의 : 화훼는 일반작물과 달리 피해규모가 크므로 별도 피해복구비지원(피해복구비 산정기준 마련)

□ 농경지 유실·매몰 복구비 지원 현실화

- 유실·매몰된 농경지의 복구비 지원 규모가 적어(지원 60%, 용자 및 자부담 40%) 농가부담 가중 및 동절기 지원시기 부적정
- 건 의 : 농경지 복구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(60%→80%) 가을착수 사업으로 조기 지원 요망

수해피해복구비 산정기준 반영건의

우리 시는 금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각 부처가 제정 고시한 피해복구산정 대상에 누락된 것이 있고 복구비용산정 비율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기복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

파 주 시

수해피해복구비 산정기준 반영건의

현 황	문 제 점	건 의
<p>【이재민 생계구호분야】</p> <p>1. 이재민 발생시 다음과 같이 생계구호를 실시하고 있음</p> <p>□ 응급생계구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호기간 : 7일 ○ 1인/1일 지원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 : 2,008.6원 -백 미 : 432g -부식비 : 1,339원 <p>□ 장기생계구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호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전 파 : 53일 -반 파 : 23일 ○ 1인/1일 지원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 : 1,857.43원 -백 미 : 288g -정 맥 : 138g -부식비 : 1,339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해발생시 지급되는 응급구호는 각종 수재의연금품으로 총당하여 구호가 가능하나, ○ 주택전파, 유실, 반파에 대하여 장기생계 구호시 1가구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구호기간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전파의 경우 98,443원 -반파인 경우 42,72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위 금액으로는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생계구호비는 최소한 거택보호자에게 지원되는 수준의 최저 생계비로 지원되도록 조치 요망 ○ 1가구 1인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 파 : 214,000원 - 반 파 : 107,000원

현황	문제점	건의의
<p>【주택등 건축물 피해 보상분야】</p> <p>1. 주택은 복구비산정 기준이 있으나 상업용 건물등 피해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복구비 산정 기준이 없음</p> <p>○ 상업용건물 피해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 : 877개소 - 전 파 : 21개소 - 반 파 : 38개소 - 침 수 : 818개소 <p>2. 또한 점포의 상품피해에 대한 복구비 산정이 없음</p> <p>3.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하실 침수시 기계 및 전기설비에 대한 복구비가 없음</p>	<p>○ 단독주택 및 주거용 건물은 보조금 및 용자 복구비가 있지만 공장, 상가등은 복구비가 없어 민원발생소지가 있음</p> <p>○ 대부분 영세상인들로서 재기불능을 호소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</p> <p>○ 전기 및 기계설비를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주민 부담만으로는 복구에 어려움이 있음</p>	<p>○ 공장, 상가등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지급되도록 법제화 요망 (피해액산정기준 마련)</p> <p>○ 상품이나 기자재등에도 복구비용(보상비) 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치 요망</p> <p>○ 영세상인 조기 생업안정을 위한 상업자금 장기저리융자 요망 (점포당 2천만원 규모)</p> <p>○ 기계 및 전기설비등은 피해액에 따라 보조금 및 복구 용자금지급 기준을 법제화 요망</p>

현황	문제점	건의의
4. 주택전파 및 반파시 복구비 부족	○ 복구시 평당 단가 120만원으로 산정되어 15평기준 동당1,800만원 지원으로는 복구비 주민부담 가중	○ 복구비를 현실성에 맞게 평당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부담 최소화
5. 주택침수 수리비가 현실과 맞지 않음	○ 현행 평당 35~75만원 은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부담가중 (보상기준에 주민불만)	○ 침수 수리비를 현실에 맞게 150~200만원으로 상향 조치
6.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복구비 산정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준이 없음 (수재의연금만 지급)	○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으로 의연금 지급 (전파180만원, 반파 90만원) 만으로는 복구불능	○ 허가 건축물과 동일하게 지원 요망

현황	문제점	건의의
<p>【농산물피해복구분야】</p> <p>□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은 화훼에 대한 침수피해복구비 산정기준이 없음</p> <p>○ 피해농가 : 74농가</p> <p>1.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3항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(대통령령 제15032호) 별표1의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내역에 의하던 2.0ha 이상의 피해농가는 간접지원 (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, 이재민장기구호, 수업료 감면, 무상양곡지급, 농조비 감면)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음</p> <p>2. 하천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</p>	<p>○ 화훼는 침수피해에 대한 복구비 산정기준이 없어 일반작물에 포함 시킴으로서 실제 피해액 산출 및 지원이 불가함</p> <p>○ 2.0ha 이상 경작농가는 간접지원 대상에서 제외 됨으로서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음은 물론 대정부 불신을 초래</p> <p>○ 작물 피해시에는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농약대와 복구비 지원기준이 없음</p>	<p>○ 화훼는 일반작물과 달리 피해규모가 크므로 침수 피해에 대하여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피해액 산출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</p> <p>○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2.0ha 이상의 경작농가에 대하여도 간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 개정 건의</p> <p>○ 하천부지 농경지에 대하여 일반 농경지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포함 하되 지원액을 현실화 하여야 함.</p>

현 황	문 제 점	건 의
<p>3.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업재해 피해조사 요령(농림수산부 예규 제186호)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상황 최종보고는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, 피해정밀 조사 보고는 최종보고후 15일 이내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냉해, 서리, 우박등의 피해는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후 조사 보고토록 되어 있음.</p>	<p>○ 동법 동요령 2호서식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해 시에는 퇴수가 완료된 후 지적도에 대략적인 피해내역을 표시한 후 면적을 집계하여 피해 상황 최종보고 하고</p> <p>○ 21호 서식에 의거 관외 출입 경작자 농업피해상황을 해당읍면에 통보한 후(시장, 군수는 관외 거주자의 피해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)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 대장을 작성(가족사항, 학생내역, 농가농지규모 소유농지 및 규모소유농지 및 임차농지의 피해내역을 작성 농가단위 피해율을 산정, 영농자금 융자상황) 하여 복구비 소요내역등을 철저히 조사토록 되어 있으나</p> <p>○ 읍·면·등에서 정밀 조사서를 작성하기전에 내무부등 중앙부처의 사실조사 실시로 농가별 피해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음</p>	<p>○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피해 조사보고요령(농림수산부 예규 제186호)에 의한 조사기일경과후 중앙부처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토록 건의</p>

현황	문제점	건의의
<p>【어선 피해복구 분야】</p> <p>1. 한탄강 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사건으로 피해를 본 임진강 어선 45척이 이번 수해로 전파되어 또다시 피해를 입어 생계가 막연한실정임</p>	<p>○ 현행 보상기준에 의할 경우 지원 20%, 용자 및 자부담 80%를 보상토록 되어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팽배함</p>	<p>○ 영세어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80%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저리 용자지원 요망 (호당 1천만원)</p>
<p>【축산피해복구분야】</p> <p>○ 수해시 정전사태로 인하여 젖소의 경우 착유기, 냉각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적기에 착유가 불가능하여 유방염이 발생하였고</p> <p>※ 유방염발생 및 치료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 생: 58농가 치료완료: 24농가 508두 치 료 중: 34농가 196두 <p>○ 젖소가 침수로 인한 피신등으로 쇼크를 받아 임신우의 경우 유산, 사산 외상을 입어 경제적 손실이 많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태 : 3농가 5두 치 료 : 5농가 30두 	<p>○ 수해로 인한 간접피해인 유방염, 유, 사산, 외상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산정되지 않아 양축농가에 많은 손실이 예상됨</p>	<p>○ 유방염, 외상의 치료비와 유, 사산에 대한 재해 복구비(보상비) 포함 산정근거 마련</p>

현황	문제점	건의의
<p>○ 축사의 침수, 전파로 인하여 양축농가의 생계 기반상실과 특히 무허가축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의에 빠져 있음</p> <p>【공공시설피해복구분야】</p>	<p>○ 무허가 축사는 재해 복구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</p>	<p>○ 허가, 무허가를 구분하지 말고 사실상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포함 산정근거 마련</p>
<p>1. 환경기초시설 피해발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파주 봉암 분뇨처리장 침수로 2차 침전지 스크레퍼감속기 외 2종 피해발생 (피해추정 : 2억원) · 쓰레기 적환장 침출수 · 지하펌프장 침수로 가동 중단 <p>【주유소 및 공장, 광산 시설물 피해복구 분야】</p>	<p>○ 공공시설 피해복구비용 산정기준에 환경기초시설 피해복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</p>	<p>○ 자체단체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비 지원 요망</p>
<p>1. 주유소 및 집단공급시설 피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유소 : 5개소 · 피해액 : 178백만원 	<p>○ 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비 산정기준이 없고 주거용 주택만 복구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형평성 결여</p>	<p>○ 피해복구비 산정기준 마련과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 요망</p>
<p>2. 공장 및 광산시설물 피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장 : 22개소 (4, 850백만원) · 광산 : 1개소 (139백만원) 	<p>○ 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비 산정기준이 없어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임</p>	<p>○ 피해복구비 마련과 장기저리융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요망</p>

현황	문제점	건의의
<p>【재해복구비 지방비 부담 분야】</p> <p>1. 지해복구비 지방비 부담탄력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및 59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율을 정하여 복구 비용을 분담토록 재해 복구비용 산정지침에 규정 · 지방비 부담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최고 : 내무부 소관 소하천 정비등 100% 부담 -최저 : 문체부 소관 문화재시설등 30% 부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상 지방비 부담율이 과다하여 금번 500mm이상 집중호우와 같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는 감당 불가 · 파주시 순 재정자립도 : 38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연재난지역의 광범위한 복구사업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항에 의거 국고지원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각종 재난복구 비용 산정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최소한의 지방비 부담 요망
<p>【교육 분야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해로 인해 수해지역 초·중·고교생들의 경우 학용품은 물론 교과서가 모두 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음 (※방학전2학기 교과서 모두 배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들은 무상지원 해주기를 바라는 여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해지역 초·중·고생의 경우, 개학전 정부(문교부)에서 교과서 무상 지원 요망

현황	문제점	건의의
<p>【공해방지시설피해분야】</p> <p>○ 세차장 등에 설치된 공해 방지시설 복구 지원</p> <p>【골재채취장비에 대한 보상】</p> <p>○ 골재채취장비등 보상 기준 제정</p> <p>- 골재채취장비(골재 채취선및선별기, 생산 골재등)의 보상기준이 없음</p> <p>· 채취장소 : 파평면 두포리 467-3(임진강)</p> <p>· 위탁생산자:임진산업</p> <p>· 채취기간: '95. 5. 25 ~ '96. 7. 25</p> <p>· 투입장비:준설선 1 선별기 1, 로우더 2 굴삭기 1</p> <p>· 생산골재량:약20,000m³ (모래)</p> <p>· 피해액 : 378백만원</p>	<p>○ 세차장 등에 공해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에 미포함되어 형평 불균형</p> <p>○ 집중호우로 골재채취 장비를 해체하여 옮길 여유가 없어 선별기가 매몰되고, 골재가 유실되는등 막대한 재산피해로 중소기업인 골재위탁 생산자가 도산위기에 있음</p>	<p>○ 공해방지시설에 대하여 복구비 지원기준 법제화</p> <p>○ 골재채취장비에 대한 수리비 및 유실된 골재 재채취 생산비에 대한 지원 요망</p>

수해피해현황

- 강우량 : 404mm(최고:적성면 559mm, 최저:조리면 322mm)
 - 년평균 강우량 1,299mm의 31% 집중호우
- 인명피해 : 사망 1명
- 이재민 발생 : 1,750세대 4,870명
- 농경지 침수 : 32개지구 4,485ha
 - 농경지 유실,매물 962ha
- 건물피해 : 4,335동
 - 유실 3동, 전파 62동, 반파 212동, 침수 4,058동
- 가축피해 : 148,021두
 - 소 64 돼지 4,524 닭 138,752 기타 4,681
- 하천·제방유실 : 45개소 65,232m
- 공공시설피해 : 410개소
 - 도로·교량 28개소 3,645m, 수리시설 95개소, 수도시설 2개소
 - 소하천 10개소 1,323m, 철도 3개소 70m, 군부대시설 183개소, 기타 89개소
- 기타 사유시설
 - 선박 45척, 수산시설 2개소, 어망 81통
 - 공장 22개소, 광산 1개소, 축사 2개소, 비닐하우스 21ha, 기타 2개소
- 총 피해액(추정) : 55,664백만원

현황	문제점	건의
<p>【민방위분야】</p> <p>○ 병력동원 훈련소집의 경우 “재해발생시 동원 예비군훈련 및 면제지침(’96. 1. 16)”에 의거 직접 피해자의 경우 읍·면·동장이 확인한 예비군에 대하여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</p>	<p>○ 재해지역 예비군의 경우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방위대원의 경우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음</p>	<p>○ 민방위대원의 경우도 피해지역의 하반기 민방위교육 대상자중 직접 피해자(병력동원 훈련소집 면제 대상자 시준에 준한)의 경우는 읍·면·동장의 확인에 의거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</p>

서 면 답 변 서

질문기관	산업,건설위원회	답 변 자	건설도시국장
질문의원	이종필 의원	질문일시	1996. 8. 9

【질문내용】

 풍수해 응급복구 보고자료에서 피해액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와 특히 가옥 및 가축에 대한 피해액의 산출근거는?

【답변내용】

○ 풍수해 응급복구 보고자료에서 피해액에 대한 산출근거는?

-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 및 '96풍수해피해조사요령에 의하여 시설별 피해현장을 답사하여 피해유형별 및 물량등을 산출하여 ['96.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행한 '94.피해액산정기준]에 의거 피해액을 산출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인 피해액 및 복구비가 산정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 가옥 및 가축에 대한 피해액의 산출근거는?

- 주 택

- '96풍수해피해액 산정기준에 의거 주택 피해액 산정은 구조별 평당 단가와 내구년한(내용연수 내구년한)에 의하여 산출하며

- 가 축

- '96풍수해피해조사요령에 의하여 가축의 피해는 피해물량만 기재하고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며, 우리시의 가축피해액은 피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.